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해제) 신청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 확인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지급정지(해제)가 필요한 계좌에 한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본인명의 보유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니다.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객확인사항

지급정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지급정지 시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 및 출고 거래가 정지되며,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 또한 제한됩니다. 단,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매매거래는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참여 금융회사 창구에 한하여 일괄해제도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시, 신청한 계좌의 출금 및 출고 거래 정지가 해제됩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등록된 사고신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한 개인정보노출사실 등 여타 사고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여타 사고신고의 미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또한,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해제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출금거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해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정보

1) 신청내용

신청업무	<input type="checkbox"/> 지급정지	<input type="checkbox"/> 지급정지 해제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	<input type="checkbox"/> 금융사기 우려

2) 계좌정보

개설기관명	계좌번호	개설기관명	계좌번호

3.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은 상기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해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손해 등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또는(서명)

※ 대면접수 시 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신청기관	담당자서명	(인)	책임자 서명	(인)
------	-------	-----	--------	-----